

시행일 : 2008.01.30.

시행일 : 2010.12.24.

시행일 : 2020.04.29.

“정 관”

희영학술문화재단

희영학술문화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 및 학술 연구사업과 학술 문화사업을 실시 함으로서 교육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법인은 “희영학술문화재단” (이하 “재단”) 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논산시 내동 26번지에 두며,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85번지 및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59번지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
3. 국내·외 연수 및 학술교류 비용 지원
4. 교육발전을 위한 출판보급사업 등 지원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및 무상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조 (회계의 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법인의 설립자
2. 본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①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댓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 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 및 제33조에 규정한 사항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상임이사를 겸할 수 있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제 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조직과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와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 29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상임이사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1조 (서면 결의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 32 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와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 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임용, 보수, 사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수 익 사 업

제 33 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과 제 4 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2. 제조업 및 도·소매업

② 제 1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34 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 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 35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8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법령을 따르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40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u>직 위</u>	<u>성 명</u>	<u>주 소</u>	<u>임 기</u>
이 사 장	김 희 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52	4년
상임이사	안 병 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7-11 원풍A 10-105	4년
이 사	김 대 영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7-3 미성A 7-601	2년
이 사	박 인 성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혜밀리A 211-904	2년
이 사	오 영 록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18-5	2년
감 사	김 태 연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13-21 32/2	2년
감 사	황 의 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1-6	1년

부 칙

본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97년 4월 29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2구좌	850,000,000	○ 예 치 금 ₩897,230,453중 기본재산 ₩850,000,000 보통재산 ₩47,230,453
계		₩85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850,000,000	○ 예 치 금 ₩897,230,453 중 기본재산 ₩ 850,000,000 보통재산 ₩ 47,230,453
계					₩ 85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97년 4월 29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2구좌	850,000,000	○ 예 치 금 ₩897,230,453중 기본재산 ₩850,000,000 보통재산 ₩47,230,453
계		₩85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850,000,000	○ 예 치 금 ₩897,230,453 중 기본재산 ₩ 850,000,000 보통재산 ₩ 47,230,453
계					₩ 85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94년 11월 11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4구좌	870,000,000	○ 예 치 금 ₩921,153,725중 기본재산 ₩870,000,000 보통재산 ₩51,153,725
계		₩87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870,000,000	○ 예 치 금 ₩921,153,725중 기본재산 ₩870,000,000 보통재산 ₩51,153,725
계					₩ 87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95년 12월 24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8구좌	949,400,000	○ 예 치 금 ₩970,428,225중 기본재산 ₩949,400,000 보통재산 ₩21,028,225
계		₩949,4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949,400,000	○ 예 치 금 ₩970,428,225중 기본재산 ₩949,400,000 보통재산 ₩21,028,225
계					₩949,4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97년 11월 7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8구좌	1,100,000,000	○ 예 치 금 ₩1,236,656,149중 기본재산 ₩1,100,000,000 보통재산 ₩136,656,149
계		₩1,1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100,000,000	○ 예 치 금 ₩1,236,656,149중 기본재산 ₩1,100,000,000 보통재산 ₩136,656,149
계					₩1,100,000,000	

현재의 기본재산목록표

1. 기본재산 총괄표

(2000년 2월 25일)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8구좌	₩1,300,000,000	○ 예 치 금 ₩1,368,296,921 중 기본재산 ₩1,300,000,000 보통재산 ₩68,296,921
계		₩1,3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300,000,000	○ 예 치 금 ₩1,368,296,921 중 기본재산 ₩1,300,000,000 보통재산 ₩68,296,921
계					₩1,30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표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1월 29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2구좌	2,3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금					2,300,000,000	
계					2,300,000,000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표

1. 기본재산 총괄표

(2010년 12월 21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부동산	1	7,479,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평 가 액	비 고
토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5-9	대지	456.9	7,479,000,000	
	“	35-10	“	366.5		
	“	35-11	“	163.3		
	“	35-12	“	169.9		
	“	35-13	“	152.1		
	“	35-16	“	327.5		
	“	35-17	“	525.1		
건물	위지상 건물(희영빌딩)			13,840.134		
계					7,479,000,000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정관임.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표

1. 기본재산 총괄표

(2010년 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부동산	1	13,647,861,18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평 가 액	비 고
토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5-9	대지	456.9	4,538,730,000	
	“	35-10	“	366.5		
	“	35-11	“	163.3		
	“	35-12	“	169.9		
	“	35-13	“	152.1		
	“	35-16	“	327.5		
	“	35-17	“	525.1		
건물	위지상 건물(희영빌딩)			13,840.134	9,109,131,180	
계					13,647,861,180	